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35
----------	------

2024년 4월 2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형재 의원 (찬성의원 39명)
나. 제안일 : 2024년 4월 3일
다. 회부일 : 2024년 4월 8일
라. 상정일 : 2024년 4월 29일(월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형재 의원)

가. 제안이유

-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장소이자 국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임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 4. 12. ~ 4. 16.) 결과 : 의견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균형발전본부) : 원안 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태극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는 국기 게양대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관리) ① (생략) <신설>	제3조(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24. 4. 3.일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였음

※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1-1733, 김형재 의원 발의 (찬성자 39명),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생략) < 신 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 내용

“조례 개정 타당성 검토”

(1)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 가능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점,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도록 하는 점,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국기 선양 사업으로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기의 게양 및 국기 게양대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6조(국기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광화문광장 시설 결정 사항 및 국기 게양대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광화문광장(종로구 세종로 1-68일대)은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1952년 도시계획시설(광장)로 최초 결정¹⁾된 이래 201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²⁾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유형³⁾ 상 ‘일반광장(중심대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음(붙임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1) 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2019.8.8.)

■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비고
변경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경계조정 -종로구 적선동 57-3번지 일대 편입 -증)287.8㎡	•광화문광장 월대복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선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

3) 광장의 세부유형 : ①교통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②일반광장(중심대광장, 근린광장), ③경관광장, ④지하광장, ⑤건축물부설광장

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지정된 광화문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기 게양대를 어떤 시설로 구분할 것인지와 ▲시설물이 광장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먼저 국기 게양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설비’로 정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작물’의 하나로 판단되며,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도시계획시설 내 개발행위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을 참조하여 국기 게양대가 광화문 광장의 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에서는 국기 게양대 설치 관련 허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 준수에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임⁴⁾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리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1)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 (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2009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건립 사례 참조 : 동상은 공작물로서 기준금액이 2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추경편성 및 제작진행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함 (2009. 6. 24. 제216회 정례회)

※ 공작물 (工作物)

▶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정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담·동상·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터널·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참조)

▶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 ①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②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등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및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참조)

“조례 개정에 따른 고려 사항”

(1)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

- 광화문광장의 관리·운영은 「광화문광장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균형발전본부(광화문광장사업과)가 총괄부서로서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 및 조형물 등의 이용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광화문광장 내에 전시관,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 영구적인 조형물의 설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하여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발의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하면 광화문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국기 게양대를 영구조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조형물등이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2) 국기 및 국기 게양대 관련 법령 준수

- 관련 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서는 국기의 게양일, 게양 방법, 국기 게양대(깃대)의 설치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국기 게양대 설치와 관리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연중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설비나 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할 것임(붙임2~3)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 ① 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 ② 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대와 유엔기·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청사,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국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국기게양대의 설치 장소별 권장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 지면에서 7 미터 이상. 다만,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 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옥상 및 차양대(遮陽臺) 위 : 옥상·차양대 바닥에서 3 미터 이상
 3. 건물벽면 : 조기(弔旗) 게양이 가능하도록 게양할 국기 세로 너비의 3배 이상
- ② 건물 및 건물 주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국기게양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 ③ 국기게양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게양대 간 간격은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서로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는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기인 태극기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그 의미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음
- 국기 게양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작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내 설치가 가능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국기 선양 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음
- 다만, 향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실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 준수에도 주의를 다하는 한편, 국기 게양대 설치 이후에도 시설관리와 안전조치를 빈틈없이 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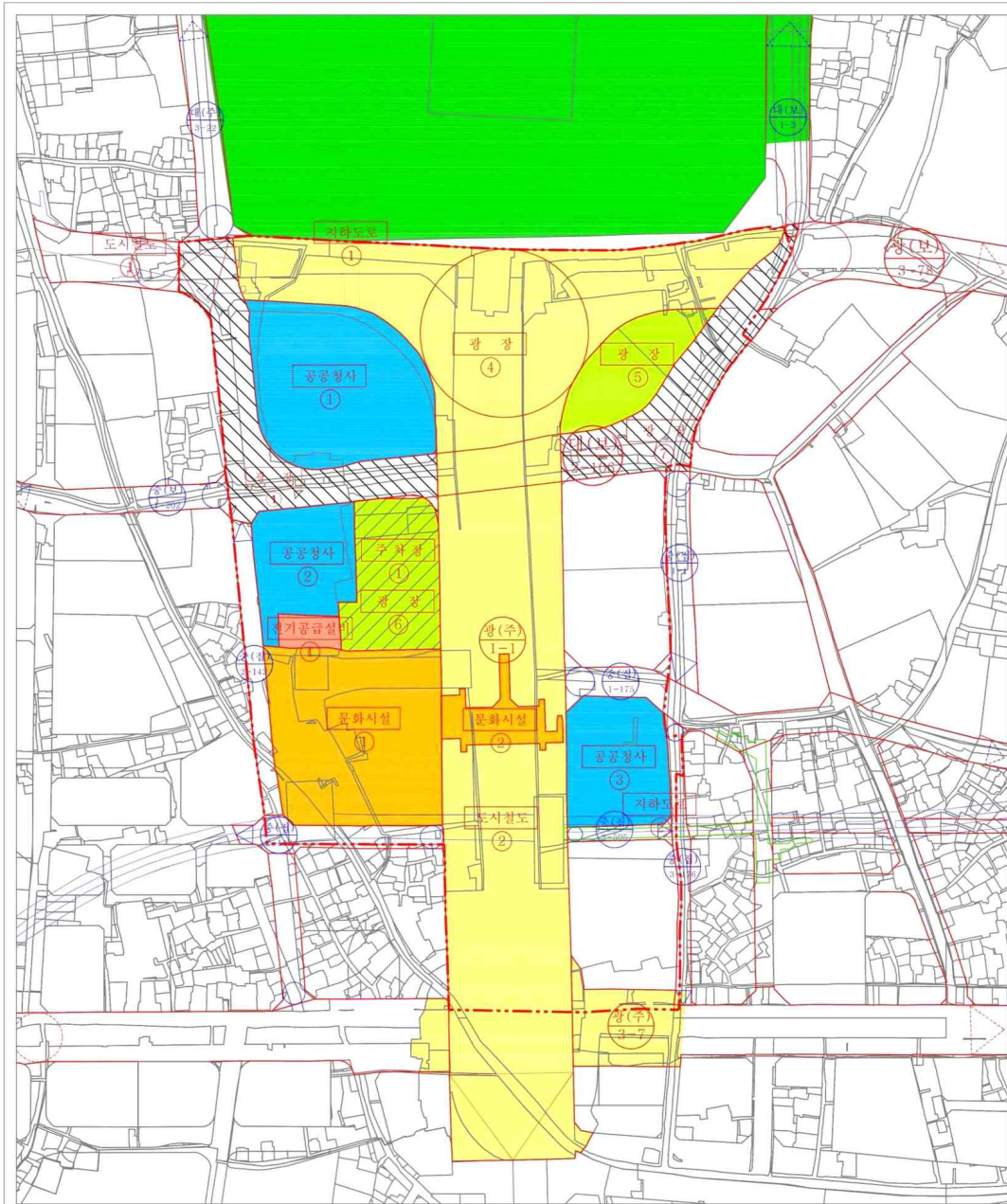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범 례 -

- | | |
|-------------|--------|
| 세종로지구단위계획구역 | 전기공급설비 |
| 정비사업구역 | 공공청사 |
| 도로 | 문화시설 |
| 지하보도 | 공원시설 |
| 철도 | 중 로 |
| 주차장 | 대 로 |
| 교통광장 | 광 로 |
| 일반광장 | |
| 경관광장 |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N

Scale = None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7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 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 坤:☷, 坎:☵, 離:☲) 4괘(卦)로 구성한다.

②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 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기의 계양일 등) ① 국기를 계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76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제4조(국기에 대한 맹세) 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 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 ① 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로 구성한다.

② 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③ 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 : [문자 생략])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 : [문자 생략])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離 : [문자 생략])를 각각 배열한다.

2. 패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패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패와 태극사이의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패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패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패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패는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 생략]

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제10조(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①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7.>

1.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
2. 국기게양대와 유엔기·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게양대를 중앙에 설치하고,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중앙에서 왼쪽 첫 번째에 설치한다. <신설 2008. 7. 17.>

⑤ 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의 높이는 다른 게양대보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높게 하고, 그 간격은 깃면의 길이(가로)보다 넓게 한다. <신설 2008. 7. 17.>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 : 오전 7시
2. 강하 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8.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는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대형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 ②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 ③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4조(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별표 5-2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개정 2008. 7. 17.>

②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 7. 17.>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19조(게양식 및 강하식) ①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9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2. 건물의 울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제21조(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 [문자 생략])괘가, 왼쪽에 이(離 : [문자 생략])괘가 오도록 한다.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3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병운,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9명)

1. 제안이유

-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장소이자 국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임.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 ① (생 략) <u><신 설></u>	제3조(관리)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 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u>
<u>② ~ ④</u> (생 략)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관리)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광화문광장 내에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 비용

나. 전제

- 제3조(관리)는 2018년 철원군 세출사업명세서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비용을 준용
- 설치비용은 첫해에만 발생하고 그 이후(2026~2029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철원군 제공자료 활용, 서울시 담당 부서 문의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75,000천원(연평균 3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비용		163,000	-	-	-	-	163,000
	○대형국기게양대 유지관리 비용		-	3,000	3,000	3,000	3,000	12,000
	소계(a)		163,000	3,000	3,000	3,000	3,000	175,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총 비용(a-b)			163,000	3,000	3,000	3,000	3,000	175,000

※ 철원군 제공자료 활용

4. 덧붙이는 의견 : 국기 게양대 크기 및 규모 변동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관리)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75,000천원(연평균 35,000천원)
 =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비용 + 대형 국기게양대 유지관리 비용
 = 163,000천원 + 12,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비용		163,000	-	-	-	-	163,000
	○대형 국기게양대 유지관리 비용		-	3,000	3,000	3,000	3,000	12,000
	소계(a)		163,000	3,000	3,000	3,000	3,000	175,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63,000	3,000	3,000	3,000	3,000	175,000

※ 비용은 2018년 철원군 소이산 정상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비용을 준용

-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비용 ≙ 163,000천원
 = 대형 국기게양대 + 조명공사 + 태극기 구입 비용
 = 150,000천원 + 10,000천원 + 3,000천원
- 대형 국기게양대 유지관리 비용 ≙ 12,000천원
 = 3,000천원 × 4년

3. 관련사진



철원 백마고지 기념관 대형 국기게양대